

## 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

제 정 1995. 9.

개 정 2012. 10.

개 정 2020. 2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02.06.)

**제2조 (구성 및 임무)**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**제3조 (임기)**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는 총장이 별도의 면직을 하지 않는 한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.(개정 2020.02.06.)

**제4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0.02.06.)

1.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
3. 졸업이수학점과 학점체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4. 성적평가제도 및 수업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수업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 (의안발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.

②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안으로 발의한다.

**제6조 (회의)**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.

**제7조 (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)** 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8조 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9조 (기타)**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